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0. 1.

환 경 부

목 차

I. 사업 개요	1
II. 사업 추진체계	2
III.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
IV. 완속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1
V. 보고 및 자료제출	15

1. 목적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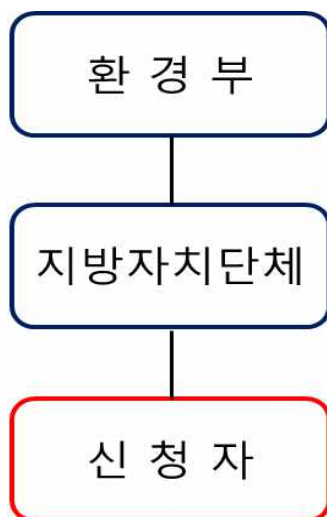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3. 2020년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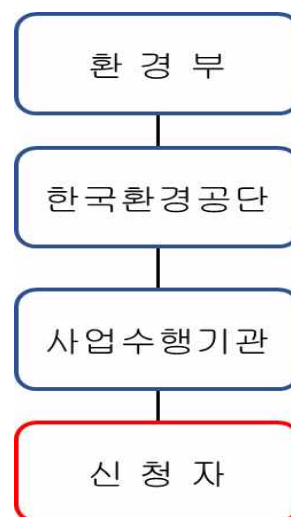
-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 사업비 : 총 718,200백만원(국비 기준)
 - 자치단체자본보조 : 전기자동차 694,2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한국환경공단) : 완속충전기 24,000백만원

4. 보조금 집행 체계도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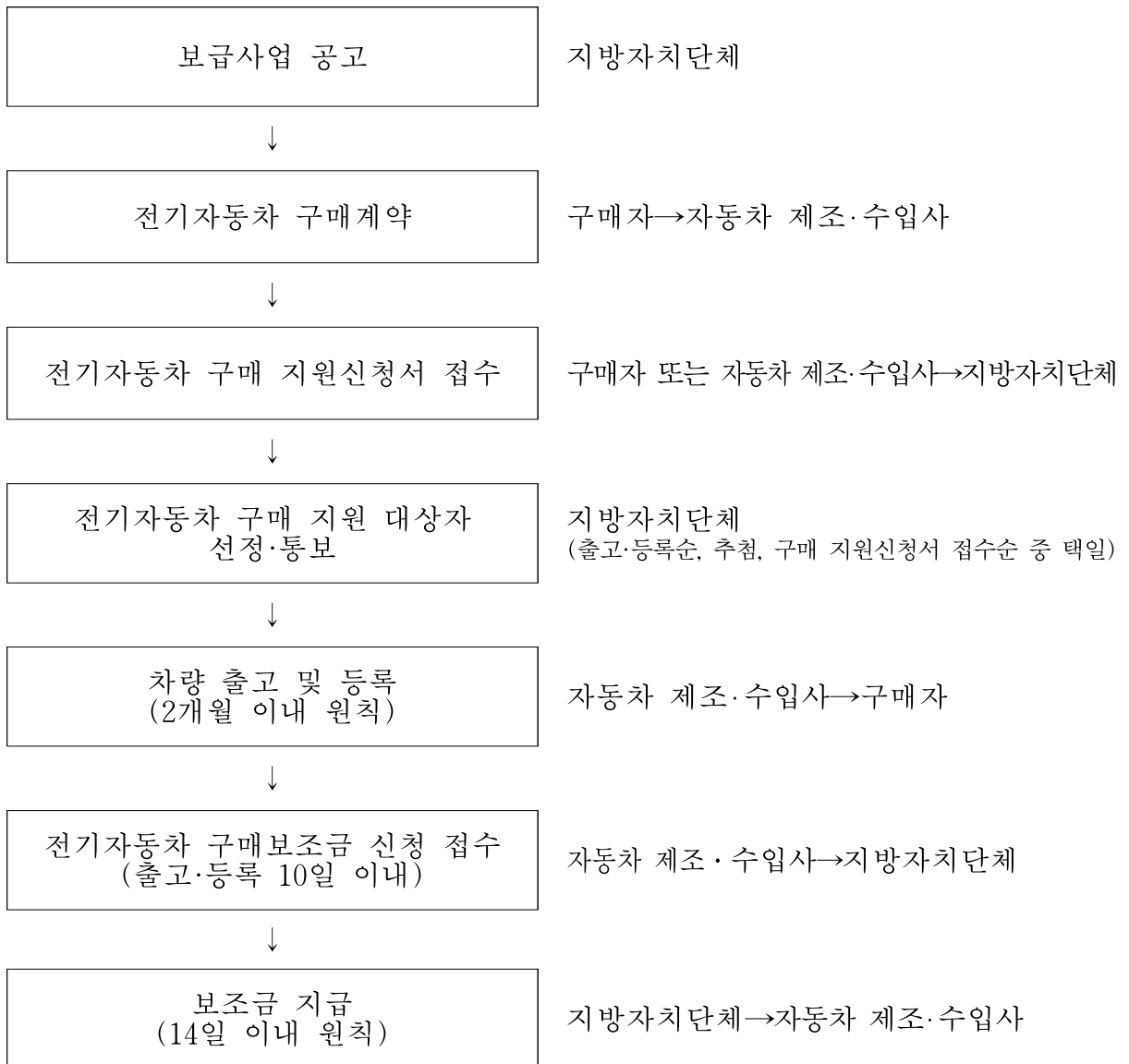
< 완속충전기 보조사업 >



1. 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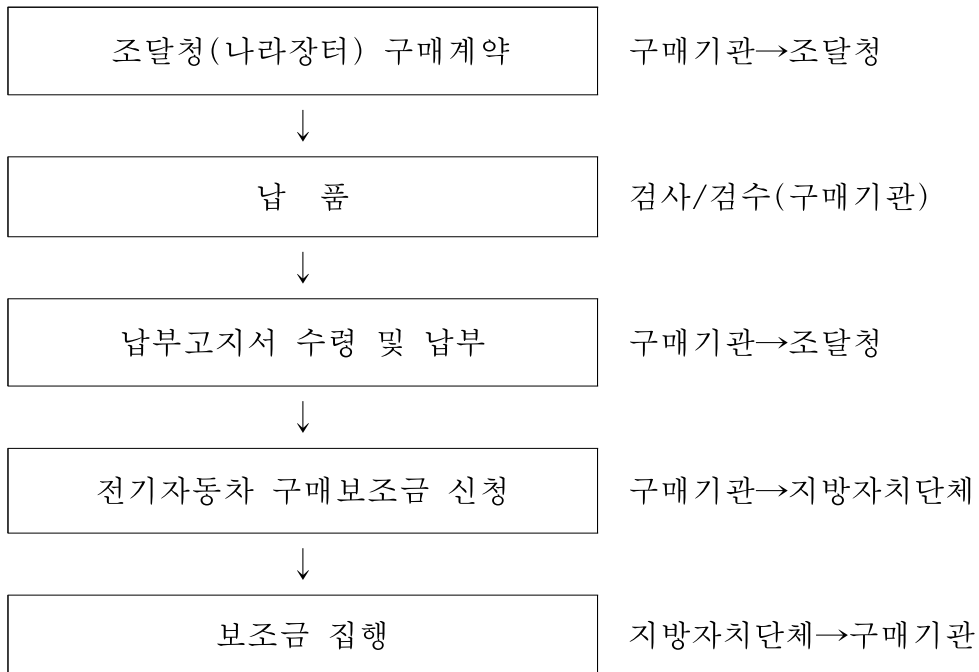
1-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1-1. 민간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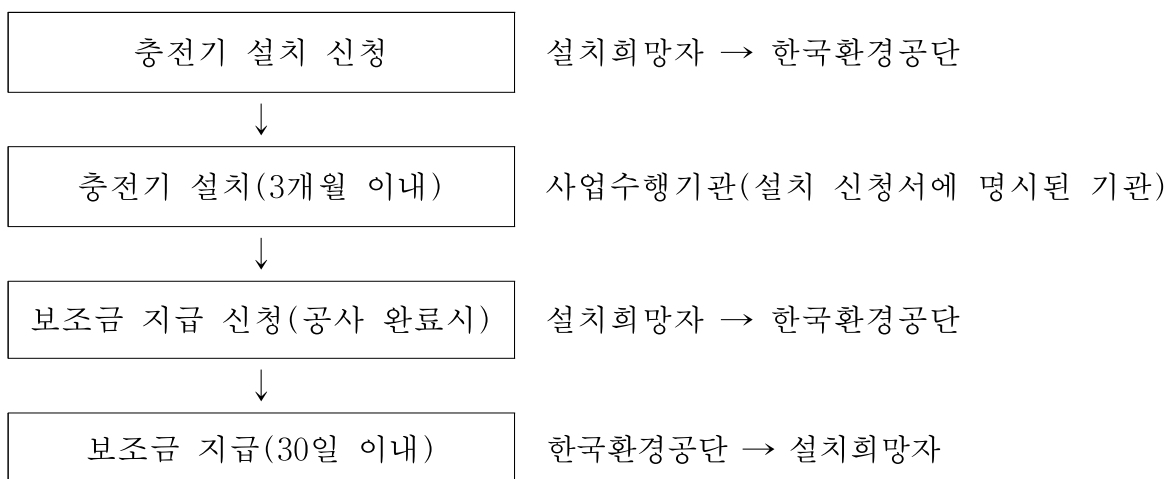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1-1-2. 공공부문



-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1-2. 완속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 충전기 설치희망자는 설치 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수령 업무를 사업수행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2.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광역)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비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 여부 등)
- 지방자치단체
 - 국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방비보조금 편성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자치단체 보조사업)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운영
 -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통계 관리
 - 완속충전기 사업수행기관 등록 관리
 - 완속충전기 보조금 집행 업무 수행
-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사업수행기관
 - 충전기 제품 등록
 - 충전기 설치 신청 대행, 현장조사, 설치공사
 - 보조금 지급 신청·수령 대행
 - 충전기 운영·사후관리

1.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2.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3.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전기승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업체 차량 여부를 고려하여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별표 1과 같음
- 전기택시*는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
 -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제출)
 -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전기자동차 :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
- 전기승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10,000만원)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별표 2과 같음
 - ※ 자동차 분류기준(중형, 대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름
- 전기화물차 보조금 : 차량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1,800만원)
 - ※ 자동차 분류기준(초소형, 경형, 소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름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별표 3과 같으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지침개정 없이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4. 보조금 집행 절차

4-1. 민간 부문

4-1-1.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급사업 공고
 - 공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조건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4-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행 가능

4-1-3.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출고·등록순, ②추첨, ③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할 것
 - ②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③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물량의 최소 2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3분기까지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만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할 것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지방자치단체 승인 시 변경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 구매 시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상호 기관에 확인

4-1-4. 보조금 집행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한 번에 10부 이상의 증빙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함께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 증빙서류(지방보조금이 있는 경우),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동차 등록증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정계좌의 수를 최소한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전기버스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버스 제조업체에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음(선금급 지급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4.2. 공공 부문

4-2-1. 차량 구매

-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지 1호의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출고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등), 자동차 등록증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4-2-2. 보조금 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4-2-2. 보조금 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5. 보조사업 관리

5-1. 관리대장 작성

-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 환경부는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대장 열람·제출 요청 가능

5-2. 통합콜센터 운영

-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문의창구를 일원화하고, 원활한 보조금 신청을 위해 통합콜센터 운영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통합콜센터로 구매상담요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진행상담, 계약, 출고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콜센터에 제공

5-3.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5-4.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참고

-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리대장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5-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법령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곧바로 환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함

1. 보조금 지원 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전기차 충전기 등의 충전인프라 설치를 희망하는 자

2. 보조금 지원 충전기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시공·설치된 충전기
- 보조금 지원 충전기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보조금 지원단가는 충전기 개방(완전, 부분)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지원

< 전기차 충전기 >

(단위 : 만원)

완전 공용			부분 공용		
1기	2~5기	6기 이상	1기	2~5기	6기 이상
350	300	250	300	260	210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가 부담

-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 편의를 위해 과금형 콘센트와 설치비 등 지원

< 충전기 보조시설 >

(단위 : 만원)

과금형 콘센트	전용 콘센트	콘센트 설치비	무선인식표지*
40	5	20	1.5

* 무선인식표지(과금형 휴대용 충전기용 RFID Tag 등)는 동일장소에 최대 100개까지 지원

※ 모든 종류의 이동형 충전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충전기 보조시설을 설치

4. 보조금 집행 절차

※ 충전기 설치희망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등록된 사업수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인터넷 또는 전화 이용)

4-1. 사업수행기관 등록

- 환경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수행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 등록은 한국환경공단에 하며, 자격요건 및 등록방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따름

4-2.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 보조금을 지원받아 완속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소유 운영 주체 등은 한국환경공단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신청
- 충전기 설치 신청은 보조금 지원 자격, 충전기 설치 가능 여부, 보조금 지원 가능 잔여물량 등을 확인·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제4호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1. 충전기 설치계약서
2. 현장점검 확인서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신청 현황 등을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 (ev.or.kr)에 공지하며, 충전기 설치 신청에 상당한 하자(중복신청, 잔여물량 소진 등)가 있는 경우에 해당사항을 설치희망자에게 통보하여 조치 가능

4-3.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부에 등록된 사업수행기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현장조사, 설계 도서 작성,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설치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설치 신청서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3개월 이내에 충전기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충전기 수량·제품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한국환경공단에 변경사실을 알림

- 사업수행기관은 필요시 충전기 설치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한 인원 한도 내에서 외주 모집 대행사를 활용 수 있으며, 외주 모집 대행사의 등록 및 관리 절차는 [별표4]를 준수

4-4. 보조금 지급

- 설치희망자는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설치 완료를 신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1. 준공서류(도면, 내역서, 현장사진 등)
 2. 하자보증서
 3. 세금계산서
 4. 사업자 등록증
 5. 기타 증빙서류(한전불입금, 안전관리자선임비 등)
-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지원조건 일치, 청구금액의 적정성, 현장조사 등을 30일 이내로 확인, 불가피한 경우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기간 연장 가능
- 한국환경공단은 완속충전기 보조금을 신청한 자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되, 필요시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가능

5. 권한의 위탁

-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충전인프라 구축관련 보조금 집행·정산업무 위탁가능
-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수행기관 등록, 충전기 등록 관리, 보조금 집행·정산 등의 업무 수행
- 환경부는 위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를 지도·감독

6. 보조사업 관리

6-1. 관리대장 작성

- 사업수행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 환경부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을 위해 필요시 사업수행기관에 관리대장 열람·제출 요청 가능

6-2. 충전기 운영·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공용충전기의 서비스요금을 산정하고 운영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책임
 - 충전기 사용요금은 사업수행기관이 공공급속충전기 사용요금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
- 부실시공 및 A/S 고의 지연사례 등으로 인한 민원접수 시 사업수행기관은 환경부 완속충전기 보조금 사업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6-3. 중복지원 금지

- 공동주택 등에 공용 완속충전기가 이미 설치(또는 설치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점의 최대 충전기 지원한도에서 기 설치된 수를 차감하여 지원한도 책정
 - 구체적 산정방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참고

6-4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 사업수행기관은 다량의 충전기를 동시에 설치할 경우 IT기술 등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충전기 우선 설치
- 사업수행기관은 공동주택 등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완전 공용 충전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1. 보조사업 집행상황 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매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자동차) 지방자치단체, (완속충전기) 한국환경공단

2. 보조사업 완료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8호 서식)을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자동차) 지방자치단체, (완속충전기) 한국환경공단

3. 보조금 예산자료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익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환경부에 제출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2020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2. 2020년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
3. 2020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4. 외주 모집 대행사 등록 및 관리절차

[별지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2.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관리대장
3. 충전기 보조금 신청대장
4. 전기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5. 전기차 공용충전기 설치 완료 확인서
6. 충전인프라 구축실적 관리대장
7.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월별 보고
8.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9. 보조사업 신청서

[별표 1]

2020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연비보조금(40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40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

-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 합계는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한해 20만원 정액지원
 -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평균가중연비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연비를 말함
 - * 연비계수 = 가중연비 ÷ 평균가중연비
 - 가중연비는 전기자동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말함
 - *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 + (저온연비×0.25)
 - * 저온연비 = (저온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 × 상온연비
 - 평균가중연비는 보조금 지원 차량의 가중연비 평균을 말함
 - * 평균가중연비 비교대상 차량은 2019.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완료하고 판매대수가 100대 이상인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 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은 및 단종 차량은 제외
(단, 2020년에는 2017년 인증차량 포함)
 -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가중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주행거리계수 = (0.002×가중주행거리) + 0.31
 - * 가중주행거리 150km 미만은 0.6, 400km 초과는 1.11
 - 가중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0.75) + (저온주행거리×0.25)
- 전기승용차의 '연비'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표시연비'를 사용하며, 상온주행거리 및 저온주행거리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 결과' 사용

[별표 2]

2020년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승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text{연비보조금}(\text{규모별금액} \times \text{연비계수}) + \text{주행거리보조금}(\text{규모별금액} \times \text{주행거리계수})] \times \text{차량규모계수}$$

- 규모별금액은 각각 중형 3천만원, 대형 5천만원이며,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 합계는 중형 6천만원, 대형 10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 중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료소비율 대비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말함
 - * 연비계수 = 최저연료소비율 ÷ 연료소비율
 - * 연료소비율(Wh/km · kg) = 배터리용량 ÷ (1회충전주행거리×공차중량)
- 연료소비율이란 공차 1kg이 1km를 주행하는데 소비되는 배터리의 전력량을 말함
 - * 최저연료소비율 비교대상 차량은 2019.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단, 2020년에는 2017년 인증차량 포함)
-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주행거리계수 = (0.004×주행거리) + 0.01
 - * 300km 초과는 1.21
- 차량규모 계수란 차량의 규모(크기)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차종	차량 규모(길이)	가중치
중형	7m 미만	0.8
	7m 이상 ~ 8m 이하	1.0
	8m 초과	1.2
대형	9m 미만	0.9
	9m 이상	1.0

- 전기승합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사용

[별표 3]

2020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승용	현대	코나 (기본형)	5.27	381.75	820
		코나 (기본형, HP)	5.46	395.70	820
		코나 (경제형)	5.42	237.75	766
		아이오닉('19년 HP)	5.92	260.50	820
		아이오닉('19년 PTC)	5.84	256.75	814
	기아	니로 (HP)	5.17	375.88	820
		니로 (PTC)	5.02	364.50	820
		쏘울('19년 기본형)	4.99	358.25	820
		쏘울('19년 도심형)	5.18	235.00	744
	르노삼성	SM3 Z.E ('18년)	4.03	190.33	616
	BMW	i3 120Ah ('19년)	4.92	226.00	716
	한국GM	볼트	5.08	353.98	820
	닛산	LEAF	4.69	212.25	686
	테슬라	Model S(Standard)	4.14	353.50	736
		Model S(Long Range)	4.11	465.70	771
		Model S(Performance)	4.09	466.85	769
		Model S100D	3.82	430.65	748
		Model P100D	3.64	406.58	734
		Model 3(Standard)	5.23	317.28	793
		Model 3(Long Range)	4.52	402.85	800
		Model 3(Performance)	4.24	373.80	760
	재규어 랜드로버	I-PACE	3.22	306.50	605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	-
대창모터스		DANIGO	-	-	400
캠시스		CEVO-C	-	-	4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화물

구분	종류	제 조·수입사	차 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화물	초소형	세미시스코	D2C	512
		대창모터스	다니고3	512
		대창모터스	다니고3 픽업	512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512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800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승합

구분	종류	제조·판매사	차종	연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차량 규모 (m)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승합	중형	조이롱코리아	e6	0.110	160.90	6.01	3,797
		BYD	eBus-7	0.167	145.90	7.11	3,621
		한신자동차	바네스	0.102	184.30	6.01	4,193
	대형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128	0.073	156.20	10.99	7,172
			일렉시티 256	0.065	319.20	10.99	10,000
		에디슨모터스	이화이버드 (272kW)	0.058	378.00	10.99	10,000
			이화이버드 (204kW)	0.068	261.20	10.99	9,568
			이화이버드 (*18년)	0.078	241.50	11.03	8,603
		우진산전	아폴로1100 (204kW)	0.075	214.20	10.98	8,197
			아폴로1100 (257kW)	0.069	300.20	10.98	10,000
		자일대우	BS110CN	0.076	145.70	11.00	6,816
			FX120	0.065	228.10	12.00	9,085
		대양기술	그린어스	0.068	118.90	10.61	6,697
		피라인	HYPERS (신형)	0.065	262.80	10.51	9,791
			HYPERS (H)	0.067	259.90	11.20	9,571
		JJ모터스	VBUS	0.067	244.70	10.52	9,305
		북경모터스	그린타운 (850)	0.076	194.40	8.54	7,002
		섬글로벌	E-SKY	0.063	366.70	11.20	10,000
		디피코	HU-SKY	0.080	195.00	8.55	6,823
		에스에이피	VoltOn	0.061	381.55	10.99	10,000
		한신자동차	매그넘 9	0.086	145.10	9.01	6,342
			매그넘 150	0.074	202.10	10.57	8,012
			ADEONA	0.078	190.30	11.97	7,605
		BYD	eBus-9	0.086	221.50	9.48	7,858
			eBus-12 (K9DA)	0.087	319.80	11.27	9,411
			eBus-12 (K9DB)	0.087	319.80	11.27	9,411
			eBus-12 (K9DC)	0.061	221.50	9.48	10,0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별표 4]

외주 모집 대행사 등록 및 관리절차

1. 외주 모집 대행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기관 등록 시 외주 모집 대행사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외주 모집 대행사의 명단이 변동될 경우 사업수행계약일 이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등록되지 않은 외주 모집 대행사를 통해 충전기 설치요청자를 모집할 경우 한국 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설치신청서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4. 외주 모집 대행사 및 소속직원은 두 개 이상의 충전사업자에게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되지 않은 충전사업자의 설치 요청자 모집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000시장 · 군수(도지사)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완속충전기 설치에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000시장 · 군수(도지사)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관리대장

연번	일자	성명 (법인명)	신청 자(체)	차대 번호	차량 번호	차종	수량	계약일	선정일	출고일 (등록일)	취소일	지출일	보조 금 (a+b +c)	국비 (a)	도비 (b)	시 군 비 (c)	예산 연도

※ 지출일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가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충전기 보조금 신청대장(월)

사업 수행기관	0000	설치가능대수 (설치능력/월)	000대	신청대수	000대
------------	------	--------------------	------	------	------

연번	신청자	설치지역	설치장소 유형	소유자	충전기 용도	설치대 수	차량구 매여부	비고
1	00아파 트	서울	공동주택		부분공용	3	여	
2	길00	제주	공동주택	공동소 유	부분공용	2	부	
3	00주차 장	부산	기타		완전공용	3	부	

[별지 제4호 서식]

전기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아파트/사업자명		보유 주차면수/설치대수	/ 대			
설치 희망지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도로명 주소 :					
신청자 (기관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충전기 사용기간	전기차 충전을 위해 전용주차 구역을 배정하고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동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대행 모집사	회사명	담당자명 (연락처)		
설치유형	<input type="checkbox"/> 완전개방 - 모든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토록 개방 ※ 환경부 전기차 홈페이지에 위치, 상태정보 표시			(서명)		
	<input type="checkbox"/> 부분개방 - (ex. 아파트 입주인) 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타인의 사용을 제한 - 개방시간 : <input type="checkbox"/> (:)부터 (:)까지 개방, <input type="checkbox"/> 24시간 개방			(서명)		
설치수량 및 요금	희망수량	완속충전기 ()기	과금형 콘센트 ()기	전용 콘센트 ()기	무선인식표지 ()기	다채널 충전기 ()기
	결제방식	<input type="checkbox"/> 현장결제(비회원 결제가능)		<input type="checkbox"/> 후불청구(회원결제)		
	요금(안)	회원	원/kWh	비회원	원/kWh	
	기타사항					
2020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아파트/사업자 명 : _____ . (입주자대표위원회)대표 : _____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차 충전기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차 공용충전기 설치 완료 확인서

신청자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 휴대폰 :		
설치 사업수행기관					
설치장소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도로명 주소				
설치내역	공용(<input type="checkbox"/> 완전개방, <input type="checkbox"/> 부분개방)				
	완속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전용 콘센트	무선인식표지	다채널 충전기
	기	기	기	기	기
보조금 신청금액	원				
입금계좌	충전사업자	은행명	계좌번호		
<p>2020년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align="right">2020년 월 일</p> <p align="right">신 청 자 : (인)</p> <p>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p>					
<p>※ 구비 서류 : 준공서류(도면, 내역, 사진), 하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각1부.</p> <p>※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장소가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용 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등)</p>					

[별지 제6호 서식]

충전인프라 구축실적 관리대장

연번	일자	설치장소	원전공용 /부분공용	소유주	충전기 종류	설치대수	사업수행 기관	지출일	보조 금액	예산 연도

※ 지출일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자가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월별 보고(국비 기준)

1. 0월 전기자동차 보급 또는 완속 충전인프라 구축 실적

(단위 : 대·기, 백만원)

구 분		총 계		전년도 이월분		당해년도 본예산분		당해년도 추경예산분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전기자 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0.5t)								
	화물(1t)								
	버스								
완속 충전기									

2. 0월 기준 누적 전기자동차 보급 또는 완속 충전인프라 구축 실적

(단위 : 대·기, 백만원)

구 분		총 계		전년도 이월분		당해년도 본예산분		당해년도 추경예산분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전기자 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0.5t)								
	화물(1t)								
	버스								
완속 충전기									

3. 특이사항(부진사유 등)

※ 상기 자료는 엑셀파일로 시트별 구분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국비 기준)

1. 추진실적

(단위 : 대·기, 천원)

구 분		계획(편성 예산 기준)								실적(예산 집행 기준)								이월		불용	
		전년도		당해년도		당해년도		예산현액	전년도		당해년도		당해년도		총 집행						
		이월	본예산	추경예산	추경예산	이월액 집행	본예산 집행		추경예산 집행	이월	예산	이월	예산	이월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전기 자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0.5t)																				
	화물(1t)																				
	버스																				
완속 충전기																					

※ 상기 자료는 엑셀파일로 시트별 구분 작성

2. 증빙서류

- 가. 예산집행증빙서류
- 나. 전기차 구입관련 서류
- 다. 충전기 설치관련 서류
- 라. 전기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기관 현황
- 마.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9호 서식]

보조사업 신청서

1. 0000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단위 : 대, 백만원)

지자체	계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0000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산정 근거